

의안번호	제 56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 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6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, 제3조)
- 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, 제5조)
-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, 제9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회의 기능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 “전담기구 협의회”라 한다)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·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
2.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
3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협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,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충청북도 감사관 및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(이하 “안전감찰 업무”라 한다)를 담당(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)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.

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연 1회

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, 회의 개최 전,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

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충청북도 안전정책부서장이 주재하며,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, 포럼·워크숍·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6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)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존속기한) 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협의회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협의회 설치 및 운영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,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

## 3. 관련조문 : 안 제2조(기능), 제4조(회의), 제7조(수당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정기회의 1회 개최, 실무협의회 1회, 임시회의 등에 따른 지급수요 규모는 연간 3회 예상

- 위원 21명 중 공무원 제외 인원 6명으로 1명당 100천원(회의참석 100천원) 소요

$$\text{※ } 100\text{천원}(1\text{명}) \times 6\text{명} \times 3\text{회/년} = 1,800\text{천원}$$

나. 추계결과 : '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9,0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 ※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을 활용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출	1,800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외부기관 참석수당 등	1,800	1,800	1,800	1,800	1,800	9,000

## 6. 작성자 :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“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### 제77조(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)

⑤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 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86조의2(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 “전담기구협의회“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·활동 등의 협조
2.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
3.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.
-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.
-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